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 1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法律 第7387號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한다.

법률 제7074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

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제7074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의 금액 등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제표 작성 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등을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일 것

제15939호

관

부

2005. 3. 10. (목요일)

⑤(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연속적으로 반영되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 그 위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해소하여,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공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 1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 영 교
장 관

◎法律 第7388號

大統領警護室法中改正法律

大統領警護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5939호

관

문

2005. 3. 10. (목요일)